

【 2016.07.18(월) 강원일보 】

# 양양공항 발주 공사서 '실적제한' 논란

도내 건설업계가 발주처의 과도한 실적 규정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최근 추정 가격 7억 5,900만여원의 '양양공항 활주로 재포장 및 제방방장 설치 전 기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에는 도내 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지역의무공 동도급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대표사는 물론 공동수급체

공사경험 없으면 투찰 규제… 도내 108개 기업 중 5개만 참여  
업계 재공고 요구… 공항공사 "활주로 안전성 위해 실적 필수"

구성원까지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건설업계는 도내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다 활주로 관련 전기공사 사례가 많지 않다면 실적제한 규

정을 제외한 재공고를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입찰을 강행, 지난 15일 당시 업체가 대표사로 있는 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도회 관계자는 "도내 108개 업체가 투찰했지만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실제 지역 5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무리한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활주로 공사는 특수한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동수급사의 실적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강원도 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운기자 faw4939@knews.co.kr

【 2016.07.18(월)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부도난 구성원의 공동경비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한 경우, 대표사가 공동경비를 선집행한 후 구성원 중 한 건설사가 회생 등 부도가 난 경우 대표사는 그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사가 집행한 채무를 조합채무로 보아 부도난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중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의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발주처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미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며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

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부도난 구성원의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채무에 관하여도 개별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